

조선시대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성

鄭海恩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무과방목의 현황
3. 무과방목의 간행
4. 무과방목의 수록 내용
5. 맺음말-무과방목의 사료적 특성

1. 머리말

榜目은 科擧及第者의 명부로 과거급제자에 관한 1차 자료이다.¹⁾ 방목에

1) 조선시대 각종 방목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三木榮, 1939 「司馬榜目に就いて」, 『書物同好會會報』.

___, 1975 「司馬榜目に就いて-現在<司馬榜目>一覽表」, 『朝鮮學報』 11집.

桂勳模, 1968 「司馬榜目總錄 附司馬試設科年次」, 『歷史學報』 38, 역사학회.

___, 1980 「司馬榜目總錄 附司馬試設科年次」, 『歷史學報』 88, 역사학회.

崔珍玉, 1986 「朝鮮時代 榜目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史學』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南姬, 1997 「朝鮮時代 雜科榜目の 資料的 性格」, 『古文書研究』 12, 한국고문서학회.

는 합격자 본인에 대한 기재 사항으로 시험에 응시할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나타낸 前歷, 姓名, 字, 生年, 本貫, 居住地를 수록했고, 가족사항으로는 급제자 아버지의 職役과 이름, 형제관계, 부모의 具存 여부 등을 기록하여 급제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풍부한 사실을 전해준다.

조선시대 문과는 1393년(태조2)부터 시행되었고 무과는 1402년(태종2)부터 시행되었다. 1402년에 무과가 시행된 이후부터 文科와 武科는 對舉로 시행되어 한쪽을 시행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함께 실시하였다. 그래서 壬辰倭亂 때 軍兵 확보를 위해 무과만 따로 시행한 사례를 제외하고 문과·무과의 실행 시기와 횟수는 같았다. 하지만 과거급제자 명부인 방목의 간행은 문과와 무과가 서로 달랐다. 文科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전체를 시기별·科名別로 나누어 집성한 종합방목이 남아있어 현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문과의 對舉로서 함께 실시한 무과는 상대적으로 사료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과방목은 虎榜이라고도 한다. 무과방목은 현재 조선시대 무과급제자 전체를 집성한 종합방목이 전하지 않고 1回分의 과거급제자만 수록한 방목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무과방목 단독으로 되어있지 않고 앞에는 문과방목, 뒤에는 무과방목을 실은 ‘문무과방목’(龍虎榜)의 합본 형태이다. 表題에서 「○○문과방목」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뒷부분에 무과방목이 대부분 덧붙여 있다.²⁾ 예컨대 『庚子式年文武科榜目』(1660년)은 겉장의 제목을 ‘庚子式年文科榜目’이라 했지만 ‘附武榜’이라 하여 무과방목이 함께 수록되었다. 문무과방목을 문과방목이라고만 호칭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崇文賤武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³⁾

2) 예외적으로 현재 전라남도 求禮 雲鳥樓의 文化柳氏家에 보관된 『乙酉謁聖龍虎榜』(1825)은 명칭은 ‘龍虎榜’이지만 내용은 무과방목만 있다. 이 방목은 柳億(1796~1852)의 무과급제를 기념하기 위해 간략하게 집안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방목의 내용은 급제 당시 급제자 본인의 職役·성명 및 아버지 이름만 간단하게 기록했다. 본인의 前歷은 甝·通·訓·閑·萬·勇 등 한 글자로만 표시하였다.

3) 현전하는 武科榜目은 文科·武科의 방목이 합쳐 있으므로 엄밀하게 ‘문무과방목’으로

필자는 1991년부터 무과방목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무과방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古書目錄에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書名에 ‘文武科榜目’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를 실마리로 하여 무과에 관심을 갖고 방목을 수집하였다. 수집 초기에는 무과방목이 예상한 것보다 많았으나 수집하면 할수록 남아있는 방목이 매우 부족했으며 무과방목의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았다.

현재 한국사 연구에서 武科나 西班職 연구는 아직까지 미개척분야에 속한다.⁴⁾ 이 방면의 연구가 저조한 이유는 조선시대는 文治主義 사회로서 文班을 우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武班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 연구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문과나 문반직의 연구는 활성화된 반면에 무과나 서반직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다가 무과나 서반 관련 자료가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것도 연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과방목은 무과급제자에 대한 1차 사료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과방목의 현황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형편이다. 무과방목 이외에 무과 급제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로 『武科總要』나 武譜를 비롯한 각종 족보류, 『嶠南科榜目』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종합한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의 전체 인원수조차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처럼 무과급제자에 관한 사료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武班도 어엿한 양반이었으며 武科가 고위 서반직에 진출하는 중심적인 통로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과나 서반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무과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먼저 현

호칭해야 한다. 하지만 본고의 내용이 무과방목에 초점을 맞추었고 ‘문무과방목’ 안에서도 문과방목과 무과방목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무과방목’이라 지칭했다.

4) 조선시대 武科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鄭海恩, 2002 『朝鮮後期 武科及第者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쪽 참조.

전하는 조선시대 武科榜目을 조사해 무과방목의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그리고 조사한 방목을 토대로 하여 무과방목의 간행 경위와 자료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무과방목은 필자가 조사·수집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더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과나 서반직에 대한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방면의 자료에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2. 무과방목의 현황

(1) 무과방목의 현황

榜目은 科擧 시험의 합격자 名簿로 과거시험이 실시될 때마다 만들어졌다.⁵⁾ 무과방목 역시 다른 과거시험과 마찬가지로 무과의 실행 횟수만큼 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무과시험은 初試·覆試·殿試의 3단계가 있었다. 그래서 방목도 초시방목·복시방목·전시방목이 각각 만들어졌다.

먼저 <표 1>에서 현전하는 무과의 초시방목을 정리하였다.⁶⁾ 현재 무과의

5) 고려시대에도 科擧 합격자 명부인 『登科錄』이 현전하고 있어 방목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와 방목에 대해서는 許興植, 1981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참조.

6) 문과도 초시방목이 현전한다.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道光六年二月十五日文武官重試對擧別試文科初試一所榜』(1826년), 『道光六年二月十二日文武官重試對擧別試文科初試二所榜』(1826년), 『咸豐六年二十六日文武官重試對擧別試文科初試一所榜』(1856년)이 남아있다. 이 3책은 한 帙의 형태로 묶어서 보관되었으며 『咸豐六年二十六日文武官重試對擧別試文科初試一所榜』의 길장에 『宮內府典儀 李哲宇氏藏本』이라 쓰여있어 한 사람이 소장한 자료로 보인다. 책의 내용은 1등·2등·3등의 시험성적의 등수에 따라 시험 불 당시의 職役, 이름, 나이(숫자로 기재), 본관, 거주지, 父의 성명과 직역을 기록했다. 殿試榜目과의 차이점은 字와 父母 俱存 여부, 형제 관련 기록이 없으며 나이를 간지대신 숫자로 기재했다는 점이다. 고려대학교에도 『光緒十三年九月日忠淸道公州牧都會戊子式東堂文科

KCS I

初試入格儒生榜目成冊』(1887년)이 남아있다.

<표 1> 현전하는 무과의 初試 榜目

| 시행연도 | 榜目名 | 소장처 |
|------|---------------------------------------|-----|
| 1783 | 河東都會合二慶增廣武科別試初試入格人榜目成冊 및 矢數長成冊 | 규장각 |
| 1805 | 嘉慶十年九月日咸鏡南道洪原縣都會增廣別試武科東堂試取入格人榜目矢數并錄成冊 | 하버드 |
| 1848 | 道光二十八年十月平安道清南平壤都會慶科庭試初試入格人榜目成冊 | 규장각 |
| 1851 | 忠淸右道公州牧都會謁聖武科初試入格學子榜目成冊 | 규장각 |
| 1852 | (咸鏡)南道北靑府定都會慶科庭試武科初試試取入格人等四祖成冊 | 규장각 |

초시방목은 『河東都會合二慶增廣武科別試初試入格人榜目成冊』(1783년), 『嘉慶十年九月日咸鏡南道洪原縣都會增廣別試武科東堂試取入格人榜目矢數并錄成冊』(1805년), 『道光二十八年十月平安道清南平壤都會慶科庭試初試入格人榜目成冊』(1848년), 『忠淸右道公州牧都會謁聖武科初試入格學子榜目成冊』(1851년), 『(咸鏡)南道北靑府定都會慶科庭試武科初試試取入格人等四祖成冊』(1852년) 등 5종이 남아있다.

초시방목에는 殿試榜目과 마찬가지로 입격인의 前歷·姓名·나이·본관·거주지 및 아버지의 職役·이름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초시방목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방목 명칭에 ‘入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무과 합격자를 ‘及第者’⁷⁾라고 하는데 무과는 기예시험이

7) 조선시대에 무과 합격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문과 합격자와 똑같이 ‘급제자’였다. 조선후기에 萬科 등의 실시로 무과의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서 무과 급제자를 ‘出身’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전에서 무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급제자’였다. 참고로 문과·무과·사마시·잡과 합격자를 지칭하는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므로 초시에서 ‘入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둘째, 『河東都會合二慶增廣武科別試初試入格人矢數長成冊』이나 『道光二十八年十月平安道清南平壤都會慶科庭試初試入格人榜目成冊』처럼 시험성적을 따로 책자로 만들거나 방목 안에 시험성적을 함께 수록하였다.⁸⁾ 셋째, 초시방목 중에는 四祖(父·祖·曾祖·外祖)를 기록한 방목도 있으며 이는 殿試榜目에는 없는 중요한 기재 사항이다.

무과의 초시방목은 2차·3차 시험인 覆試·殿試가 서울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서울로 올려보냈다. 1553년(명종8)의 「科擧事目」에 따르면 각도의 문과·생원진사시의 鄉試는 榜目을 4부 작성해 1부를 감영에 보내고, 3부를 禮曹·司憲府·四館에 나누어 보내도록 했다.⁹⁾ 초시방목을 서울로 올려보내는 이유는 복시나 전시에 나갈 사람을 정확히 확인할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거사목」에 무과가 빠져 있지만 무과의 초시방목도 복시나 전시를 위해 서울로 올려보냈다고 판단된다.

무과는 복시방목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武科覆試一二所進榜目’¹⁰⁾이라 하듯이 복시방목이 만들어졌음이 확실하다. 문과에 『嘉靖四十三年甲子九月日文科覆試榜目』(1564, 충남대)이 남아있으므로 무과도 복시방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식년시·증광사에서 복시가 시행되었으므로 초시·전시방목에 비해 숫자는 적겠지만 앞으로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보통 ‘방목’이라 하면 대부분 과거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부인 殿試榜目を

- 紅牌式 教旨具官某文科<武科則稱武科>某科<稱甲乙丙>第幾人及第出身者
- 白牌式 教旨具官某生員<進士則稱進士>幾等第幾人入格者
- 雜科白牌式 某遭奉教具官某某科幾等第幾人出身者
(『經國大典』 卷3, 禮典 紅牌式·白牌式·雜科白牌式;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紅牌式·白牌式·雜科白牌式)

8) 입격인의 성적은 시험과목을 木箭·鐵箭六兩·片箭·鳥銃·騎躡 등으로 나누어 矢數·步數 등을 표기했다.
 9) 『科擧事目』: 『書誌學報』 9, 1993, 影印 수록.
 10) 『哲宗實錄』 卷7, 哲宗6年 3月 辛巳; 『日省錄』 326冊, 高宗25年 3月 28日(76책 231나).

지칭한다. 무과방목은 전 시기를 집성한 종합방목이 전하지 않고 1回分의 과거급제자만 실은 榜目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앞에는 문과방목, 뒤에는 무과방목을 엮은 ‘文武科榜目(龍虎榜)’의 합본 형태이다. 문과·무과가 對學로서 함께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 책으로 묶어서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조사된 현전하는 무과방목의 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¹¹⁾ 무과방목의 목록은 <附表>에 상세히 밝혀놓았다.¹²⁾

현전하는 무과방목은 <표 2>에서 보듯이 총 138개이다.¹³⁾ 138개의 무과방목 중에는 重試榜目 5개와 登俊試榜目 1개도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 무

- 11) 국내외에 소장된 무과방목의 현황 조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編, 『藏書閣圖書韓國版目錄』(1984)/『藏書目錄』(고서편1, 1991), 서울대학교도서관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補正版』(1980), 국립중앙도서관編, 『古書目錄』(1~5: 1970), 李相殷編, 『古書目錄』(보경문화사, 1987), 국사편찬위원회編, 『古書目錄』(1983), 국학자료보존회編, 『韓國典籍綜合目錄』(1~8: 1974~1980), 국회도서관編, 『韓國古書綜合目錄』(1968)/『古書目錄』(1995), 계명대도서관編, 『古書目錄』(1987), 고려대도서관編, 『漢籍目錄: 舊藏』(1984)/『晚松金完燮文庫目錄』(1979), 단국대도서관編, 『古書目錄』(1994), 동국대도서관編, 『古書目錄』(1981), 성균관대도서관編, 『古書目錄』(1·2·3권: 1979·1981·2002), 연세대도서관編, 『古書目錄』(1·2권: 1977·1987), 영남대학교도서관編 『古書·古文書目錄-味山文庫』(2000), 원광대도서관編, 『古書目錄』(1994), 이화여대도서관編, 『古書目錄』(1981), 전남대도서관編, 『古書目錄』(1990), 충남대도서관編, 『古書目錄』(1993), Harvard University, 『Classified Catalogue of Korean Books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1966), 北京大學圖書館編, 『(北京大學圖書館館藏)古代朝鮮文獻解題』(1997) 등을 참조하였다.
- 12) 16세기까지의 무과방목 현황에 대해서는 沈勝求, 『朝鮮前期 武科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50쪽을 참조했으며 필자가 여기에 3개의 무과방목을 더 추가하였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 소장된 武科榜目的 현황은 미국 California Irvine 대학교의 Eugene Y. Park 선생님의 도움으로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 13) 목록에는 ‘문무과방목’으로 되어있지만 합격자 리스트가 없는 방목이 3종 있다. 『崇禎三 甲寅春慈殿怡躋五旬慈宮怡躋六旬合二慶慶科庭試文武科榜目』(1794, 서울대학교), 『崇禎己巳冬皇太子誕生別試文(武)科榜目』(1629, 서울대·국립중앙도서관), 『正德己卯四月薦舉別試文武科榜目』(1519, 연세대)이다.
- 또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hollis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면 목록은 나오나 도서관에서 실제로 찾을 수 없는 방목이 2종 있다. 『天啓七年丁卯式年文(武)科榜目』(1627)과 『崇禎十五年壬午式年文(武)科榜目』(1642)이다.

<표 2> 현전하는 조선시대 무과방목수

| 王 朝 | 무 과 실시횟수 | 현전방목수 (%) | 王 朝 | 무 과 실시횟수 | 현전방목수 (%) |
|-----|-------------|--------------|-----|-------------|--------------|
| 太 宗 | 11 | · | 仁 祖 | 52 | 17(32.7) |
| 世 宗 | 21 | · | 孝 宗 | 15 | 4(26.7) |
| 文 宗 | 2 | · | 顯 宗 | 24 | 7(29.2) |
| 端 宗 | 3 | 1(33.3) | 肅 宗 | 78 | 36(46.2) |
| 世 祖 | 23 | · | 景 宗 | 9 | 2(22.2) |
| 睿 宗 | 1 | · | 英 祖 | 126 | 20(15.9) |
| 成 宗 | 29 | 1(3.5) | 正 祖 | 41 | 9(22.0) |
| 燕山君 | 13 | · | 純 祖 | 51 | 8(15.7) |
| 中 宗 | 57 | 6(10.5) | 憲 宗 | 23 | 3(13.0) |
| 明 宗 | 26 | 3(11.5) | 哲 宗 | 26 | 1(3.8) |
| 宣 祖 | 61 | 14(23.0) | 高 宗 | 80 | 3(3.8) |
| 光海君 | 28 | 3(10.7) | 計 | 800 | 138(17.3) |

* 資料：『國朝榜目』, 『國朝文科榜目』, 武科榜目(附表1).

과의 실시 횟수가 총 800회이므로¹⁴⁾ 전체의 17.3%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 분량은 여러 과거시험 중에서 가장 적은 양에 불과하다.¹⁵⁾

<표 2>에서 현전하는 무과방목의 시기별 현황을 보면 임란이전까지는 남아있는 무과방목이 드문 편이며 대부분 17~1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단종을 제외하고 태종~연산군까지의 무과방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14) 鄭海恩, 2002, 앞의 박사논문, 19쪽.

15) 참고로 문과방목은 1393년부터 1894년 폐지 때까지 조선시대 순시기의 문과방목을 집성한 『國朝榜目』, 『國朝文科榜目』, 『文科榜目』 등이 전해지고 있다. 司馬榜目은 총 230회의 시험 가운데 현재 186회분(약 80%)이 전하고 있다. 잡과는 총 233회의 시험 중 현재 177회분(76.4%)이 남아있다(元昌愛, 『朝鮮時代 文科及第者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41쪽; 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 집문당, 1998, 21~23쪽; 李南姬, 『朝鮮時代 雜科榜目の 資料的 性格』, 『古文書研究』 12, 한국고문서학회, 1997, 124~127쪽).

다. 숙종·단종·인조대의 무과방목이 30% 이상 남아있으며 선조·현종·효종·경종·정조대의 무과방목도 20% 이상 남아있다. 또 純祖 이후로 현전하는 무과방목이 적은 편이며 의외로 현대와 시기가 가장 가까운 철종·고종대의 무과방목이 희소한 실정이다. 참고로 현재 가장 오래된 무과방목은 1453년(단종1)의 방목이다. 이 방목은 거창의 草溪鄭氏 가문에서 전래된 「宣光丁巳進士榜」의 裏面에 있는 고려의 國子監試 丁巳年 방목의 하단에 실려있다.¹⁶⁾ 이 방목은 다른 방목의 하단에 실려있어 成冊 상태는 아니나 조선시대 무과급제자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명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된 무과방목 중에는 문집이나 기타 자료에 남아있는 것도 있다. 安鼎福의 『雜同散異』에 수록된 「正德己卯四月薦學別試文武科榜目」(1519년)과 『園行乙卯整理儀軌』에 수록된 「親臨于慕華館文武科庭試別試榜目」(1795년)이 그것이다. 특히 「正德己卯四月薦學別試文武科榜目」은 중종 14년[己卯年]에 실시된 賢良科의 방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文科는 1519년 12월에 罷榜되었다가 1545년(인종1) 6월에 復科, 1545년 10월에 罷榜, 1568년(선조1)에 復科되는 수난을 겪었다. 반면에 무과는 처음부터 罷榜되지 않았다. 당시 무과급제자는 장원 前內禁衛 鄭璘을 포함해 총 46명이었다. 기재 내용은 매우 소략해 급제자 본인의 職役·성명과 아버지 직역·이름만 기록되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무과방목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무과방목은 800회의 무과시험 중 138회분(17.3%)만 현전하고 있다. 무과방목은 다른 과거시험의 방목에 비해 남아있는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마저 전체 실행 횟수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무과방목은 체계적인 수집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16) 이 방목에 대해서는 許興植, 1994 「<<宣光丁巳進士榜>> 裏面 同年錄의 資料價値」, 『古文書研究』 6, 고문서학회; 沈勝求, 1999 「朝鮮 端宗代 武科及第者의 身分과 그 政治的 性格-1453년(단종1)의 式年武科榜目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88, 진단학회 참조.

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무과방목의 수집과 발굴에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무과 관련 자료

무과방목 이외에 무과 급제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武譜가 있다.¹⁷⁾ 무보는 무과급제자의 家系를 姓貫別로 나누어 기록해 놓은 綜合譜로서 대부분 19세기 후반 이후에 작성되었다. 일반 족보는 始祖나 中始祖를 기점으로 父系의 직계와 방계 자손을 두루 수록하였다. 반면에 무보는 본인을 기점으로 父·祖父·曾祖·高祖 등의 순서로 父系의 8代 直系 조상만을 본인 아래에다 수록하였다. 8대의 조상 다음에는 外祖父와 丈人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무보는 三班八世譜·縉紳八世譜·武臣八世譜 또는 三班十世譜 등으로도 불린다. 여기서 ‘삼반’이란 文科·武科·門蔭을 말하며 내용에 따라 무보·문보·음보로 나뉜다.

무보에 기재된 본인에 대한 사항은 姓名의 왼편으로부터 字, 生年(干支), 무과종류와 합격연도(간지), 관직과 제수연도(간지)를 차례로 기록하였다. 改名했으면 성명 오른편에다 조그만 글자로 별도로 적어놓았다. 무과에 급제하기 전에 추천을 받았으면 ‘南宣’ ‘薦’ ‘別薦’ ‘別將薦’ 등으로 표시했다. 또 성명의 오른편에 ‘官止○○○’라는 방식으로 최종 관직을 기록해 놓은 사람도 있다. 최종 관직은 筆體가 달라 무보 간행 이후에 追記된 것 같다. 아버지부터 위로 8대 조상, 외조부·장인에 대한 기재 사항은 본인에 비해 내용이 간단하다. ‘生’ ‘進’ ‘文’ ‘武’ ‘蔭’ 등으로 과거급제 여부를 표시하고 한 두 개의 관직을 기재하였다. 다른 사람과 先祖가 같으면 ‘見上’으로 표시해 앞서 사람의 기재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자로 出系한 자는 生父 이

17) 무보의 편찬 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鄭海恩, 1998 『武譜를 통해서 본 19세기 무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朝鮮時代の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張弼基, 1998 『朝鮮後期 『武譜』의 資料的 檢討』, 『朝鮮時代史學報』 7, 조선시대사학회 참조.

름을 양부의 오른쪽 옆에 기록했다.

무보는 이와 같이 다른 족보에서 보기 드문 출생년, 무과급제연도, 관직 및 관직제수연도가 실려있어 무과급제자의 활동 시기나 급제 이후의 관직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족보나 각종 邑誌의 武科條·人物條에 나오는 무과급제자의 기록은 생몰년이나 활동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관련 자료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무보는 비교적 내용이 충실하고 급제자의 활동 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 무과급제자의 연구 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武科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가 『武科總要』이다. 『무과총요』는 병조 武選司의 書吏로 근무한 林寅默이 1810년(순조10)에 편찬했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法典을 비롯한 각종 자료에서 무과에 관한 法規·施行細則 등을 뽑아 전거를 밝혀 수록하였다. 그리고 1591년(선조24)~1820년(순조20)까지 문·무과의 수석합격자 성명과 해당 시험의 전체 합격자 수 및 武科規矩 등을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¹⁸⁾ 이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무과합격자의 규모나 시험규정을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각종 邑誌도 무과급제자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읍지의 人物條나 科擧條에는 해당 지역 출신으로서 문과·무과·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기록해놓았다. 여기에는 무과합격연도, 先祖, 最高 또는 最終 관직을 간단히 기록했으므로 무과급제자의 출신지역을 알 경우 무과급제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지역의 무과 급제자만을 수록한 자료로는 『嶠南科榜錄』(虎榜)과 『濟州道武科及第先生案』이 있다. 『嶠南科榜錄』 虎榜은 1393년(태조2)~1894(고종31)까지 경상도의 무과급제자를 時期別·科名別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다만 「凡例」에 “虎榜과 司馬榜은 방목이 매우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으므로 단지 本單을 근거로 하여 실었다”¹⁹⁾라고 하듯이 경상도 지역의 무과급제자

18) 柳時溥, 1974 「武科總要解題」, 『武科總要』, 아세아문화사.

를 전부 수록하지 않았다. 기재 내용은 무과급제자의 字·號·生年干支·官歷·本貫·居住地, 아버지를 포함한 先祖에 관한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濟州道武科及第先生案』은 1720년(숙종46) 5월에 작성된 기록으로 현재 1책만 남아있다.²⁰⁾ 내용은 訓練院의 時任 官員 중 제주도 무과급제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기재 사항이 성명·무과합격연도만 있어 매우 소략한 점이 아쉽다.

무과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로 宣薦人の 명부인 『宣傳官廳薦案』²¹⁾도 주목된다. 宣薦人은 宣薦을 받은 被薦人을 지칭하며 宣薦이란 宣傳官薦(學)의 약칭으로 무과급제자와 閑良을 대상으로 장차 宣傳官이 될만한 사람을 미리 천거해두는 제도였다. 즉 서반직에서 청요직으로 꼽히는 선전관의 예비 후보자를 뽑아놓고 선전관에 빈자리가 생기면 이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였다.²²⁾ 피천인이 무과급제자와 한량이므로 무과급제자만의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숙종~고종연간까지 무과급제자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기재 사항은 선천인의 성명·거주지·무과급제연도, 아버지의 직역·성명, 그리고 薦主이다. 『선전관정천안』을 조선왕조실록·무과방목·무보 등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무과급제자의 관련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 밖에 무과의 장원급제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대표적으로 『무과총요』를 비롯해 『國朝榜目』, 『國朝文科榜目』 등 문과의 종합방목이 있다.

- 19) 『嶠南科榜錄』 虎榜(서울대학교도서관 상백고 351.306-B224m-v.4, 版心番號 3). “虎榜司馬榜 榜目浩大 不能盡錄 故只憑本單編入焉”.
- 20) 겉표지에 필기체로 ‘총8책’이라고 附記되었다. 『濟州道武科及第先生案』이 총8책이라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은 서두에 李枝發이 쓴 「紀文」이 있으므로 첫 번째 책에 해당한다.
- 21) 『宣傳官廳薦案』(奎章閣)은 현재 5冊이 남아있다. 1책은 1724~1775년, 2책 1777~1849년, 3책은 1850~1863년, 4책은 1864~1886년, 5책은 1886~1893년까지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이밖에 숙종연간의 선천인 명부인 『宣傳新薦案』(奎章閣)도 있다.
- 22) 宣薦에 대해서는 鄭海恩, 2001 「조선후기 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또 『海東榜目』에는 조선전기 무과의 장원급제자 39명의 가족 사항과 官歷이 수록되었다. 19세기 문과급제자 명단을 수록한 『龍門錄』에도 1880년(고종17)~1893년(고종30)까지 무과급제자 장원이 실려있다.

다음으로 무과가 아닌 각종 武才試驗의 합격자를 기록한 名簿가 남아있다. 주로 19세기에 실시된 무재시험의 합격자 명단으로 다음의 <표 3>이다.

『關西武士試取榜』은 1792년(정조16) 4월에 평안감사 洪良浩가 道内の 武士를 시취하고 보고한 내용 및 正祖의 傳敎가 실려있다. <各邑武士各技試取別單>에는 평양·의주 등 31읍에서 합격한 177인의 役·성명·거주지·시험점수를 11개 都會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賞格>에는 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直赴殿試·五衛將調用·加資·熟馬·馬·布·木 등을 상으로 내린 내용이 실려있다.

『慶尙道內武士冬春等招試優等人姓名年歲居住矢數講劃父名開錄成冊』은 1863년(철종14) 4월에 경상감영에서 시행한 武士招試에서 우등으로 합격한 5인의 명단이다. 기재 내용은 합격자의 役·성명·나이·본관·거주·시험

<표 3> 조선후기 각종 武才試驗의 합격자 자료

| 年 度 | 書 名 | 소장처 |
|------|----------------------------------|-----|
| 1792 | 關西武士試取榜 | 奎章閣 |
| 1863 | 慶尙道內武士冬春等招試優等人姓名年歲居住矢數講劃父名開錄成冊 | 奎章閣 |
| 1870 | 公忠道德山郡伽倻洞火砲手試放沒技八人榜目成冊 | 奎章閣 |
| 1878 | 慶尙道選武軍官戊寅條都試優等之次又之次人役姓名開錄成冊 | 奎章閣 |
| 1887 | 江華府丁亥秋等戊子春等都試居首及沒技人役姓名父名居住技藝劃數成冊 | 國立圖 |
| 1890 | 統營所管右道舟師都試入格人榜目 | 奎章閣 |

성적, 아버지의 직역·이름이다. 『公忠道德山郡伽倻洞火砲手試放沒技人榜目成冊』은 1870년(高宗7) 10월에 충청도[公忠道] 德山郡 伽倻洞에서 거행된 鄉試火砲科에서 滿點을 받아 直赴殿試을 받은 火砲手 8인의 명단이다. 기재 내용은 火砲手閑良姓名·나이·本貫·居住·島銃사격성적(모두 3放 3中)이 수록되었다. 『慶尙道選武軍官戊寅條都試優等之次又之次人役姓名開錄成冊』은 1878년(高宗15) 10월에 慶尙監營에서 실시한 選武軍官 都試에 합격한 5인의 명단이다. 1등 1명, 2등 1명, 3등 3명이며, 役·성명·나이·본관·거주·성적과 아버지의 직역·이름을 적었다. 『江華府丁亥秋等戊子春等都試居首及沒技人役姓名父名居住技藝劃數成冊』은 1887년(高宗24) 가을과 1888년 봄의 江華府 都試에서 居首 및 沒技人·賞試射沒技人·砲都試沒技人들의 役·성명·거주·시험성적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統營所管右道舟師都試入格人榜目』은 1890년(高宗27) 10월에 統營 都試에 합격한 45인의 명부이다. 1등 1인과 沒技 44인의 役·성명·시험성적을 기록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무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관서무사시취방』을 제외하고 상으로 直赴殿試의 특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무과의 초시방목에 해당한다. 특히 都試는 조선후기에 주로 지방에서 무예 권장을 위해 광범위하게 실시된 시험이니 만큼 현전하는 관련 자료들이 더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무과방목에 못지 않은 관심이 필요하다.

3. 무과방목의 간행

<附表>에서 제시한 무과방목 및 연대기 자료를 검토해보면 무과방목의 간행자는 크게 중앙 정부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앙 정부에서 방목을 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무과방목 중 刊記나 序·跋文을 통해 간행자나 간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목이 총 34개이다. 이 가운데 23개의 방목이 “芸閣活印” “校書館活印”이라 하여 校書館(芸閣)에서 간행되었다. 이 점은 중앙 정부에서 방목을 간행할 때에 校書館에서 담당했다는 의미이다. 사마방목 역시 17세기말 방목에서부터 卷末에 印刊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대부분 校書館에서 간행해²³⁾ 무과방목과 유사하다.

그런데 과거 급제자에게 교서관에서 간행한 방목을 반포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예컨대 1765년(영조41)에 실시한 식년시의 『乙酉式年文武科榜目』은 교서관에서 간행하여 과거 합격자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방목의 御製序文에 의하면 본인의 생전에 을유년을 두 번 맞이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²⁴⁾ 또 英祖는 1774년에 81세를 축하하는 행사로 登俊試를 실시하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방목을 간행했다. 간행한 방목은 宮闕 및 世孫宮, 5곳의 史庫에 각각 1건씩 보관하고 문·무과 급제자 전원에게 각각 나누어주도록 했다.²⁵⁾

1784년(정조8)에도 正祖는 왕세자책봉을 축하하는 과거를 실시한 후 문무과방목을 간행해 문·무과 試官 및 합격자 전원, 예조·병조·성균관과 八道·兩都에 반포하도록 했다.²⁶⁾ 이 때 정조는 “지난 先朝 을유년(1765년)에 교서관에 명해 龍虎榜目を 인출하여 서울과 지방에 반포한 것은 참으로 繼述할 만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는 곧 교서관에서 문무과방목을 간행하여 급제자 전원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매우 특별한 은전임을 뜻한다. 만약 과거시험이 끝날 때마다 정부에서 방목을 간행해 급제자에게 반포했다면 정조가 英祖乙酉年의 사례를 특별히 상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급제자 인원만큼 방목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국가에서 방목을 나눠주기란 쉽지 않았다고 본다.

23) 崔珍玉, 1998 『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 集文堂, 23~24쪽.

24) 『英祖實錄』卷105, 41年 3月 辛巳; 『乙酉式年文武科榜目』御製序文.

25) 『丙戌後三百九年甲午再登俊試榜』序文.

26) 『正祖實錄』卷18, 正祖8年 9月 辛巳; 『冊封慶龍虎榜』, 『御製冊封慶龍虎榜序』.

교서관에서 간행한 방목은 관계 기관에 보관되었다. 문과방목은 1466년(세조12)부터 의정부·예조·성군관에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했다.²⁷⁾ 그러면 무과방목은 어느 부서에서 보관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록이 『甲申別科榜目』(1764년)의 서문이다. 장황하지만 일부 내용을 옮겨보았다.

<자료 1>

(前略) 합격자를 발표할 당시에 단자를 거두지 못했으며 어느덧 7년 사이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서너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 이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아득해지니, 이름은 비록 同榜이라 하나 장차 나이와 字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도타운 정도 더 쇠해질 것이다. 근래에 내가 禁直으로 있으면서 병조에 있는 갑신년 무과방목을 베껴내어 먼저 그 생년과 성관·거주지를 알게되었다. 지금 江都誌를 간행할 때에 板材를 얻고 노는 일손을 빌려 방목을 찍어내고자 했다. 이에 이웃에 사는 동년 정택서와 윤임현 두 사람에게 부탁해 通文을 내어 두루 알려 단자를 거두고 약간의 비용도 모았다.²⁸⁾

『갑신별과방목』은 1764년(영조40)에 강도부에서 실시한 특별시험의 합격자 명부이다. 방목의 서문이 1770년(영조46)에 쓰였으므로 이 방목은 시험을 치른 지 7년만에 간행된 셈이다. 서문은 이 시험의 文科 壯元 柳宅夏가 지었다. 柳宅夏는 문과에 합격할 당시에 將仕郎(종9품)이었는데 서문에서 ‘前兵部郎中’이라 했으므로 장원 급제 후 병조의 郎官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서문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데 자세한 분석은 아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柳宅夏가 병조의 낭관을 지내면서 병조에 보관된 갑신년의 무과방목을 베껴내었다는 사실이다.²⁹⁾

27) 『世祖實錄』 卷39, 世祖12年 8月 癸卯. “傳于禮曹曰 自今文科榜目 議政府禮曹成均館 各藏一件”.

28) 『甲申別科榜目』 序文.

29) 이와 유사한 사례는 1727년의 『雍正五年丁未閏三月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 跋文에서도

무과방목이 병조에 보관되었다는 사실은 朝鮮王朝實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97년(선조30) 12월 丁酉再亂 당시에 조·명연합군을 편성하기 위한 군병을 징발할 때, 色吏의 농간으로 정예군과 출신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사간원으로 하여금 병조에 있는 兩界지방의 방목을 조사하도록 했다.³⁰⁾ 1621년(광해군13)에도 북방지역의 防戍를 위해 무과출신을 조사할 때에도 병조에서 榜目에 근거하였다.³¹⁾ 병조에서 무과방목을 보관한 이유는 병조에서 무과를 주관하기도 했지만 무과방목을 官案이나 軍案으로도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무과방목을 개인이 간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직접 방목을 간행하거나, 둘째 후손들에 의해 방목이 간행되거나 重刊되는 경우이다. 먼저 과거급제자가 직접 방목을 간행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546년(명종1) 식년시의 壯元及第者 沈守慶은 1546년에 실시된 문과·무과·중시문과·중시무과·역과·음양과·올과의 급제자 총 147명을 전부 합해 방목 한 권으로 만들어 각기 간직했다고 술회했다.³²⁾ 이미 16세기에 방목을 개인이 간행해 나누어 소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필자가 수집한 무과방목 중 서문이나 발문이 있는 방목은 11개이다. 御製序文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이 지은 서·발문이다. 이 서·발문에는 방목의 간행 과정이나 동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앞서 소개한 『갑신별시방목』 序文과 『丙戌庭試文武科榜目』(1706년) 序文에는 개인이 방목을 간행한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적고 있다. 다음에서 『병술정시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목은 1751년에 간행되었고 발문은 당시 문과급제자 嚴慶遇의 아들 嚴瑀가 썼다. 嚴瑀는 아버지의 방목을 간행할 때 草榜이 遺亡된 데다가 武科는 자료 조사가 더 힘들었다 한다. 마침 아버지와 함께 문과에 급제한 許采 선생이 병조에 소장된 武籍을 배껴주어 간행할 수 있었다 한다.

30) 『宣祖實錄』 卷95, 宣祖30年 12月 丁酉.

31) 『光海君日記』 卷168, 光海君13年 8月 庚辰.

32) 『大東野乘』 卷13, 『遑閑雜錄』.

문무과방목』 서문도 일부 옮겨보았다.

<자료 2>

내가 武藝의 미약한 재주를 가지고 다행히 병술년 정시의 무과방목에 들게 되었다. 합격자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미 두루 청화직을 차지하고 卿宰職에 출입하니 이 방목의 영광스러움이란 실로 온 세상의 선망이 되었다. 그러나 방목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으니 대체로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일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다. 나와 同榜人 閔思演이 방목이 없는 탄식을 하게되어 만들만한 형편이 되면 힘을 합쳐 완성하자고 약속했다. 불행히도 민사연이 선친 수령으로 있다가 부모의 喪을 당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 홀로 외람되어 나라의 은혜를 받아 이 해영에 부임해 형편을 살펴보니 혼자서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 이에 장인에게 명해 작업을 시작해 얼마 되지 않아 마치게 되었다.³³⁾

위의 <자료 1>과 <자료 2>의 序文를 통해 방목 간행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방목의 간행 주체는 주로 문과 급제자이나 무과 급제자가 주도해 간행한 사례도 있다. <자료 2>의 서문은 1726년 3월에 三道統制使 李載恒이 썼다. 李載恒은 1706년 정시 무과에 丙科 177등으로 급제한 후 포도대장을 거쳐 1725년(영조1) 6월에 제98대 통제사로 부임했다.³⁴⁾ 과거에 급제한 지 20여 년만의 일이며 『병술정시문무과방목』은 이 재향이 통제사로 있을 때 간행한 방목이다. 이 서문은 무과급제자가 주도하여 방목을 만들었다는 매우 귀중한 사실을 전해준다. 무과급제자라도 관직에 나가 物力이나 人力을 동원할 수 있으면 방목을 간행한 것이었다.

둘째, 방목의 간행을 위해 자료 수집을 매우 치밀하게 하였다. 개인이 방목을 간행할 때에는 榜中色掌이 單子를 거두어 방목의 기초내용을 수집하

33) 『丙戌庭試文武科榜目』序文.

34) 『統制營事蹟及右水營事蹟：統制使先生案』(『忠烈祠院誌』 收錄；『軍史』3, 전사편찬위원회, 1981).

였다.³⁵⁾ 문·무과 급제자들은 放榜式·謝恩禮·謁聖禮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單子도 이 무렵에 거두는 것 같다. 그리고 모은 자료를 토대로 草榜도 임시로 만들어 두었다. 만약 시험이 끝난 후에 단자를 거두지를 못했다면 방목을 간행할 무렵에 단자를 수합했다.

세월이 흘러 單子の 수집 마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 급제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그것은 정부 관아에 비치된 방목을 베끼는 일이 가장 간편했을 것이다. <자료 1>에서 보듯이 방목을 간행할 때에 柳宅夏가 무과급제자들의 인적사항을 직접 병조에서 베껴왔다.³⁶⁾ 또 1751년에 『雍正五年丁未閏三月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1727년)을 간행할 때에도 이 시험의 문과급제자였던 掌書 許采가 병조에 소장된 武籍을 베껴내어 무과급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³⁷⁾

셋째, 방목 말미에 있는 刊記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자료 2>의 『甲申別科榜目』에는 ‘崇禎三庚寅閏五月江都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1770년 윤5월에 강도부에서 간행했다는 의미이다. 이 과거시험이 강도부에서 특별히 실시한 別科이며 刊記 역시 강도부에서 찍어냈다 했으므로 강화부가 주체가 되어 방목을 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료 2>에서 보듯이 이 방목은 강화부가 아닌 文科壯元 柳宅夏가 同年 정택서·윤임형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간행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丁巳謁聖別試文(武)科榜目』(1677謁)의 ‘歲辛酉湖南亞使權君敬刊于全州’라는 刊記도 있다. 이 역시 全州府에서 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전주부에서 이 방목을 간행했을까 의문이 든다. 간기에 나와 있는 權持[字君敬]는 당시 이 과거시험의 문과급제자로 그가 全州府 都事

35) 『丁丑重試文武科榜目』跋文. “今年秋 余膺萊州之命 同年朴來卿 以余爲榜中色掌 而又其邑力 足以印出榜目 辭陞之日 乃以草本見授 蓋來卿同爲色掌故也…”

36) 司馬榜目の 간행 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壬午式年司馬榜目』(1522년)도 이준경의 曾孫 李必茂가 성균관 전적으로 있을 때 성균관에 소장된 先祖의 방목을 베꼈다.

37) 『雍正五年丁未閏三月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 “…第草榜年久遺亡 如武榜 尤難尋攷 仲若氏[許采] 謄示兵部所藏武籍 有多疏漏 凡例之詳 不能視 文榜爲準 是又可限爾…”.

[亞使]일 때 주도해서 이 방목을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간기가 지방이나 감·병영으로 되어있을 때 지방 관아에서 방목을 펴냈다고 여겨왔으나 그 보다는 그 지역에서 방목을 찍어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방목 간행에 드는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방목 간행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出仕한 과거급제자의 관아 명칭이 간기로 남게되는 것이다.³⁸⁾

방목이 후손들에 의해 간행될 때에는 방목을 새로 간행하거나 重刊하는 경우이다. 새로 방목을 간행한 사례로 급제자의 아들이 아버지 死後에 아버지 同年들과 함께 간행한 『雍正五年丁未閏三月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1727년)이 있다. 重刊한 사례는 원 방목이 소실되어 다시 간행한 『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1583년)이 있다. 이 방목은 1674년 11월 간행되었는데 말미에 실린 다음의 글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려준다.

萬曆 癸未年은 先君子께서 과거에 급제하신 가을해이다. 65년 동안 몇 차례 병화를 당해 남아있는 방목이 거의 없으니, 마침내 방목이 다 없어질까 걱정되어 방목 안의 자손과 함께 의논하여 이 책을 완성했다. 바라건대, 널리 유포되고 오래도록 전했으면 한다.

한편, 放榜 후 방목을 간행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刊記를 검토한 결과 다양했다. 校書館에서 간행했다 하여 일찍 간행되지 않았다. 과거를 시행한 그 해에 방목을 간행한 때는 앞서 거론했듯이 방목을 급제자에게 나눠주라는 特命이 있을 때였다. 오히려 ‘唱第後十八年庚申仲春 以芸閣活字開印’³⁹⁾ 처럼 18년이나 지난 후에야 방목이 간행되었다. 교서관에서 간행한 방목

38) 이밖에 刊記가 지방으로 되어있는 사례로는 歲舍強圉大淵獻黃鍾上浣礪城後學宋熙業識板在楊州北面永寧菴(1583謁), 癸巳中秋開刊于慶尙右道兵營晉州(1630式), 辛卯十月日刊于茂長縣(1644別), 刊于康津縣淨水寺(1683增), 歲在己卯東萊府開刊(1695別), 崇禎甲申後甲申六月日河東縣刊(1702年謁), 歲在壬子孟春以鑄字開刊于竹洞(1726式) 등이 있다.

39) 『崇禎三癸卯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卷首.

가운데 시기가 기록된 방목 23개를 조사해보면 5년 안팎이 6개, 10년 안팎이 6개, 20년 안팎이 4개였다. 18년만에 간행된 방목도 2개나 있었다. 개인이 방목을 간행할 때에도 보통 10~20년 정도 지나서야 만들어졌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무과방목의 간행은 도서관이나 개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도서관에서 간행한 무과방목은 병조 및 관련 부서에 보관되었고 급제자에게 개별적으로 반포되는 사례는 특별한 은전이였다. 이 때문에 방목을 소장하기 위해 급제자들은 同年끼리 자료나 경비를 추렴해 방목을 작성했다. 방목 간행을 주도한 과거급제자는 물적·인적 소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

4. 무과방목의 수록 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남아있는 무과방목은 단독으로 간행된 방목이 아니다. 대부분 문과와 함께 묶여서 간행되었으며 간혹 문과 외에 雜科까지 수록된 방목도 있다. 그런데 무과방목이 문과방목과 함께 묶여 간행되었다 하여 두 방목의 체재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점 때문에 무과방목의 체재와 내용을 살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문무과방목은 문과방목이 앞부분에 있는 데다가 文科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 간행되었으므로 기록이 문과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험 실시에 관한 傳敎나 啓辭, 殿試試日·放榜日 등은 문과·무과 모두 공통이지만 문과방목의 앞에 실려있다. 본고에서는 문과방목 쪽에 실려있지만 문·무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무과방목의 수록 내용으로도 파악했다.

둘째, 무과방목은 조선시대 奎時기를 망라하는 종합방목이 없고 校書館이나 개인에 의해 1回分씩 간행된 방목만 남아있다. 이 때문에 누가 간행

했느냐에 따라 附錄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 국가에서 간행된 방목은 부록의 내용이 풍부하며, 개인에 의해 간행된 방목은 자료 수집의 여건이 좋지 못하므로 자연히 부록의 내용이 소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목의 기재 내용을 일반화시켜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현전하는 방목을 검토했으므로 자료 발굴에 따라 기재내용이나 내용의 출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아래에서 무과방목의 수록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무과 급제자에 대한 내용

무과방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과급제자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사람이 무과에 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 무과급제자는 甲科·乙科·丙科로 나누어 기재되며 인적 사항은 합격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 직부전시·최종관직 등 기타 사항도 있다.

본인: 급제자 본인에 대한 기재 사항은 응시할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나타낸 前歷, 姓名, 字, 生年干支, 本貫, 居住地가 있다. 현전하는 15세기 방목에는 급제자 본인의 전력과 성명만 기재되었다. 그후 16세기 중·후반이 넘어서야 생년간지나 본관·거주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⁴⁰⁾ 나이를 干支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로 직접 기재된 방목도 있는데 대부분 무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되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무과방목에서 나타난다.⁴¹⁾

위의 사항 이외에 주목되는 부분이 直赴殿試의 표시이다. 直赴殿試는 과거시험 절차인 初試나 覆試를 면제하고 바로 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殿試는 과거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시험의 當落과는 무관하며 初試나 覆試에서 올라온 합격자의 합격 순위만을 결정하였다. 현

40) 1507년의 무과방목에는 本貫이 없다가 그후 방목부터 字·本貫·거주지가 기재되었다. 또 1576년·1583년의 무과방목에는 생년간지가 등장하고 있다.

41) 여기에 해당하는 방목으로 1765式, 1792式, 1783增, 1784庭, 1805增, 1813增, 1829庭이 있다. 이 방목들의 공통점은 父母俱存 여부나 雁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전하는 무과방목 중 直赴 표기가 처음 보이는 무과방목은 1603년 式年試이다. 직부전시를 받은 사람의 표기는 보통 무과 급제자 성명 위에 ‘直赴’ 또는 ‘直’이라고 기록해 나타냈다. 반대로 법제적으로 규정된 무과 시험의 절차(初試·覆試)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元’, ‘元一所’ ‘元二所’로 표시해 나머지 급제자들이 직부전시로 합격했음을 나타냈다.⁴²⁾ 또 ‘直赴’라는 직접적인 표시는 없지만 卷末에 ‘元榜二十八人 直赴二百七十二人’의 형식으로 元榜과 直赴 인원만 기재한 방목도 있다. 이 밖에 ‘甲午南漢試才’ ‘癸巳中甸試才’처럼 무과급제자가 언제 어떻게 직부를 받았는지 기재한 방목도 있다.(1714別·1789式·1795式·1809增)

가족: 가족 사항은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이 기본이며, 부모의 俱存 여부나 ‘雁行’欄에 형제 이름을 적었다. 養子이면 生父의 관직과 이름을 추가하였다. 부모의 구존 여부는 具慶下·嚴侍下·慈侍下·永感下·重侍下(또는 重慶下)로 구분했다.⁴³⁾ 16세기 이후부터 부모의 구존여부나 안행이 기록되었으며, 1624년 증광시부터 嫡庶兄弟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또 무과 급제자의 가족 사항이 문과급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한 방목도 있다. 방목의 간행 주체가 문과급제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무과급제자에 대한 자료 수집이 미비하거나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513년(중종8)의 『正德八年癸酉榜目』은 문과급제자의 경우에 어머니의 爵號·本貫·姓氏, 부인의 本貫·姓氏까지 기재하였다. 하지만 무과·잡과는 아버지에 대한 사항만 기재했다. 또 1727년·1767년·1790년·1792년의 문무과방목을 보면 문과방목은 雁行을 기록했지만 무과방목은 아예 雁行欄을 두지도 않았다.

기타: 1792년 식년시의 방목에는 榜末에 ‘以下九人身故人付榜末’이라 쓰

42) 『崇禎三癸卯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1783년, 서울대학교). “文直赴 各以某年某科 標諸書頭 武直赴多 不能盡標 就原榜人 名上加原字以標之”.

43) 具慶下는 父母俱存, 嚴侍下는 아버지만 살아 계신 상태, 慈侍下는 어머니만 살아 계신 상태, 永感下는 父母 모두 돌아가신 상태, 重侍下(또는 重慶下)는 祖父母와 父母가 모두 俱存해 계신 상태를 뜻한다.

고 급제자의 전력과 이름만 기재했다. 이는 殿試에 응시하기 전에 응시할 자가 사망했으면 방목의 끝에 기록하고 紅牌를 지급하라는 규정을 따른 조치로 보인다.⁴⁴⁾ 또 매우 드문 사례로 ‘添錄<以下十六人榜目修正時見漏故筵稟添錄>’도 있다.(1784庭) 이 밖에 頭註에 海科(1603式)·斬級(1603式)·斬(1615式)·仙(1615式) 등이 표시되거나 生年干支 아래에 ‘覆試壯元’(1675增)이 기록된 방목도 있다.

(2)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시험 실시에 관한 내용은 무과방목의 앞뒤에 제목 없이 실려있거나 ‘卷首’, ‘附錄’, ‘附篇’ 등의 제목을 달아 수록하기도 했다.

傳敎·啓辭 : 科擧 실시의 건의, 시험일자·試取人員數·시험과목 등 시험 운영 및 절차에 대해 보고하는 大臣·禮曹·兵曹 등의 啓文과 국왕 傳敎가 실려있다. 보통 합격자 명단을 시작하기 전에 방목의 가장 첫 부분에 실리며, 이를 통해 과거시험의 실시 배경이나 규정 등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1662년 증광시를 시작으로 17세기 중반 이후에 드문드문 나타나다가 18세기에는 비교적 자주 실린다. 특히 교서관에서 찍어낸 방목에는 대부분 들어있다.

서문·발문 : 서문이 있는 방목은 1513式·1637庭·1706庭·1764江別·1765式·1774登俊試·1784庭試이다. 발문이 있는 방목은 1471別·1583別·1651別·1637庭·1727增廣試이다. 방목의 서·발문에는 과거시험의 실시 배경이나 방목 간행에 대한 내용이 많아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시험관[恩門] : 방목에는 恩門이라 하여 시험관의 직위·이름을 기록하였다. 방목 앞부분에 문·무과 시관을 나란히 기록하거나, 문과방목·무과방목에 각각 나누어 실었다. 무과의 殿試 시관은 『經國大典』에 따르면 총8원

44) 『六典條例』卷7, 兵典 兵曹 政色 武科.

으로, 2품 이상의 문관 1원·무관 2원, 당하관의 문관 1원·무관 2원이 試取를 담당했으며,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각 1원이 監試官이 되었다.⁴⁵⁾ 또 국왕이 전시에 親臨하지 못하면 의정대신 1원을 命官으로 파견했다.

방목에는 대체로 2품 이상의 시관을 參試官, 당하관의 시관을 參考官으로 나누어 기재했으며 試所承旨라 하여 승정원의 승지 한 명이 더 기록되었다. 인원은 7~10명 정도이며 5명일 때도 있다. 15세기 방목에는 恩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1507년(중종2)의 『正德二年丁卯文武科(增廣)別試榜目』에 처음 보인다. 16세기나 17세기에도 은문 기록이 있는 방목이 드문 편이나 18세기 이후부터 은문에 관한 기록이 많아진다. 또 앞의 문과방목에는 은문이 있으나 뒤쪽의 무과방목에는 은문이 없는 방목도 있다. 은문 이외에 矢數執鼓官이나 執冊官이 기록된 방목도 있다.(1702謁·1707別·1723式·1764江別·1784庭)

榜中色掌: 1630년에 처음 나타난 이후 드문드문 등장하다가 17세기 중반부터 대부분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방중색장의 규모는 3~6명 정도이며 성명만 기재된다. 방중색장은 말 그대로 무과급제자 가운데 有司 일을 담당 한 사람으로 榜會나 무과방목 간행 등 同年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담당했다고 여겨진다.⁴⁶⁾ 방중색장 이외에 監督官의 명단이 있는 방목도 있다.(1637庭·1678庭·1699式·1707別·1710增·1714增·1723式·1725增)

殿試日·出榜日·放榜日·謝恩日·謁聖日: 출방은 합격자 발표이고 방방은 국왕이 합격증[紅牌]을 수여하는 의식이다. 사은은 방방식 다음날 문·무과 급제자 전원이 궁궐에서 들어가 임금의 은혜에 사례하는 의식이며, 알성은 문·무과 급제자 전원이 文廟에 배알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행사 일자의 기록은 방목의 주요 기재 사항 중의 하나로 殿試日·放榜日·謝恩日·謁聖日은 문과·무과가 같은 날에 행해졌다. 1624년 증광시에 殿試日·出榜日·放榜日이 처음 기록되었고 17세기 중반 이후로 殿試·放榜式

45) 『經國大典』 권4, 兵典 試取.

46) 『丁丑重試文武科榜目』跋文. 註 35번 참조.

의 거행장소가 함께 기재되기도 한다. 謝恩日·謁聖日이 기록된 방목은 1648式·1789式·1792式·1794謁·1800庭·1801庭·1801增이며 혼한 편은 아니다.

시험 과목[規矩]: 殿試의 시험과목은 1649년 庭試에 처음 보인다. 각종 행사 일자와 함께 방목에 많이 기재된 사항 중의 하나이다.

試取人員·경외입격수: 방목에는 해당 시험의 급제자 總員을 기록하기도 한다. 기재 방식은 무과급제자를 元榜·直赴人으로 나누어 각각 총원을 기록했다. 1662년 증광시 이후 1678增·1689增·1702別·1707別·1713增·1717式·1725增·1727增·1733謁·1767謁·1771式·1783증·1795式·1844增·1848增·1880增·1882增 등의 방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과급제자 총수는 서울 및 지방의 합격자 총수를 기록한 京外入格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704년 庭試에 처음 보이며 주로 18세기 방목에 나타난다. 19세기에도 1801년 庭試뿐이다. 18세기초에는 문과·무과 급제자의 총원을 함께 나란히 기록했다. 그러다가 1723년 별시부터 대부분 문과·무과가 따로따로 기재되었다. 또 京外를 서울과 8道로만 구분하다가 1725년 무렵부터 開城府·江華府를 별도로 분류했다. 한편, 京外入格數를 기록하면서 지방별로 元榜·直赴人을 분류해 기록한 방목도 있다.(1763增·1784增)

初試·覆試 사항: 1624년 증광시의 방목에 會試出榜日이 처음 실린 이후 17세기 중반부터 자주 기재되었다. 18세기부터는 내용도 풍부해지며 19세기 방목에는 「附篇(또는 附錄)」을 두어 초시·복시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초시나 복시에 대한 사항은 시험일[開場日]·출방일·試所가 주로 실리며 恩門·規矩도 많이 기재된 편이다. 이외에 초시장원(1763增·1784庭), 복시장원(1763增), 初試京外入格數(1763增), 初試·會試入格數(1790增), 初試單子數(1784庭), 各道京試官(1835增·1848增) 등도 실려 있다.

기타: 형제가 같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방목 방미에 '聯璧'(또는 聯中, 雙

聯)이라 하여 형제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1723別·1725別·1725增·1726式) 이밖에 殿試單子數(1784增)나 庫直 등도 있다.

이상으로 무과방목의 기재 사항을 알아보았다. 기재 내용이 일정하게 다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시기별로 변화가 있다. 15세기의 무과방목은 매우 간략하게 본인의 전력과 성명만 기재되었다. 16세기 중·후반이 넘어서야 본인의 생년간지나 본관·거주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아직까지 부록이 없는 방목이 대부분이다. 17세기 후반 이후에야 방목의 기재 내용이 풍부해지며 앞뒤의 부록도 많아지는 편이다.

5. 맺음말-무과방목의 사료적 특성

榜目은 科擧시험의 합격자 명부로서 科擧 及第者에 대한 1차 자료이다.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합격증을 필요로 하고 公的으로 기록이 명확하여 쉽사리 위조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이력이었다. 家門이나 職役이 위조되기도 한 조선후기 사회에서 과거 급제와 같은 정확한 이력은 개인의 출신 배경을 잘 드러내는 지표와도 같았다. 그래서 과거 급제자를 담아놓은 방목은 개인의 사회적 위상을 측정할 때 높은 공신력을 담보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무과방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 조선시대 무과급제자에 대한 자료는 빈약한 편이다. 文科는 조선시대 全時期의 급제자를 모아놓은 종합방목이 남아있지만 對擧로서 실시된 무과는 1回分의 급제자를 수록한 榜目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전하는 조선시대 무과방목은 총 138개로서 무과의 실시 횟수인 800回分의 17.3%에 불과한 상태이다.

무과급제자에 대한 자료 부족은 비단 무과방목뿐만이 아니다. 연대기사료에서도 무과급제자나 西班에 관한 내용이 문과급제자나 東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年代記가 주로 文臣들이 남긴 자료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武譜를 포함한 族譜類나 邑誌類 역시 무과 급제자에 대해 한 두 사람의 先祖나 最高官歷 이외에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무과방목은 현재까지 무과급제자를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무과방목마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과방목은 문과방목이나 사마방목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에 ‘榜目’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방목에 나타난 급제자의 전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방목의 기재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⁴⁷⁾ 또 방목의 前歷이 실제 직역과 과연 일치하는가 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1515년(중종10) 별시 문과에 합격한 進士 韓承貞은 이미 忠義衛에 입속해 군직을 띤 사람이지만 전력을 ‘진사’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므로 전력은 좀더 확실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급제자 전력을 근거로 한 통계처리 등의 기존 논고들도 실제 사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⁴⁸⁾ 이러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만큼 방목을 이용한 연구가 축적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방목의 前歷 문제를 곧 방목이라는 자료에 대한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방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방목의 前歷은 필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변조나 위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회分の 합격자명단인 단회방목의 간행 과정을 보면 간행 주체는 국가와 개인이었다. 校書館에서 필요한 부수를 작성해 문과방목은 의정부·예조·성균관에, 무과방목은 兵曹에 보관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영예를 길이

47) 車美姬, 2000 『조선후기 과거제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66~68쪽; 金昌鉉, 1996 『朝鮮初期 文科及第者의 出身背景과 進出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6쪽.

48) 朴洪甲, 1995 『朝鮮時代 門蔭制度 研究』, 탐구당, 318쪽 註88번.

남기기 위해 또는 후손들이 선조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방목을 간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기초자료는 급제자들이 錄名 때 바친 四祖單子나 榜中色掌이 거둔 단자였다. 이 과정에서 직역 변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과거시험이 당시 國王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대단한 관심거리여서 누가 합격했는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同年끼리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 ‘옛사람들은 同年을 마치 형제같이 여겨 만나면 친밀하게 대하고 보지 못하면 그리워하였다. 그 子弟들 역시 길에 나가서 父兄의 同年을 만나면 먼저 말에서 내려 존경을 나타낸 것도 진실로 父兄이 형제처럼 여겨 항상 친밀해하고 늘 사모했기 때문이었다’⁴⁹⁾라고 하듯이 同年이란 특별한 관계였다. 이 때문에 급제자가 여러 사람이나 同年의 눈을 피해 직역을 변조하는 일은 다른 기록에 비해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 또한 1637년 山城武科의 방목인 『丁丑庭試文武科榜目』을 분석하면서 무과급제자 중에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때의 직역이 아닌 남한산성에서 軍功으로 새로 받은 직역을 기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시행한 과거급제자의 전력이 평상시보다 신분이나 관직·관품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서얼들은 1696년(숙종 22)에 서얼의 직역으로 業武를 쓰도록 확정된 이후에도 방목의 前歷으로 상호군·사과·한량·겸사복·보인·친군위 등 다양한 직역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급제자가 본인의 여러 履歷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기록했다 하여 그것이 곧 방목 기록의 부실이나 오류는 아니다. 급제자가 자신의 여러 履歷 중 어느 것을 방목에 올리느냐는 당시의 사회적 관행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직역을 선택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급제자의 전력으로 現職만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前’자가 붙은 전력도 있게 되었다.

무과방목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급제자의 前歷·나이·본관·거주지, 급제자 아버지의 이름·직역, 형제관계, 부모의 생존여부 등 풍부한 내용이 들

49) 『崇禎三甲申江都府別科榜目』序.

어있다. 전력은 급제자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다가 무과에 급제했는지 또는 어떤 계층에 속했다가 무과에 투신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본관이나 거주지를 통해 급제자의 혈연관계나 지역 연고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역이나 형제관계를 토대로 하여 급제자의 집안은 물론 그가 적자인지 서얼인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방목이 갖는 사료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조사·정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K C I

<부표> 현전하는 조선시대 무과방목 목록

| 연 도 | 방 목 명 | 소 장 처 |
|------|---------------------------------|-------------|
| 1453 | 景泰四年癸酉武科同年榜 | 『古文書集成』23 |
| 1471 | 辛卯龍虎榜目 | 개인소장본 |
| 1507 | 正德二年丁卯文武科(增廣)別試榜目 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MF |
| 1513 | 正德八年癸酉(武年)榜目 | 한국정신문화연구원MF |
| 1519 | 正德己卯四月薦學別試文武科榜目 | 『雜同散異』 |
| 1522 | 壬午式年文武科榜目 | 고려대 |
| 1540 | 庚子式年文武科榜目 | 계명대, 고려대 |
| 1543 | 癸卯式年(文武科)榜目 | 계명대 |
| 1549 | 己酉式年文武科榜目 | 山氣文庫 |
| 1560 | 庚申文武科別試榜目 | 誠庵도서관 |
| 1564 | 甲子式年文武科榜目 | 충남대 |
| 1567 | 丁卯式年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570 | 庚午式年文武科榜目 | 고려대 |
| 1572 | 隆慶六年壬申十二月初二日文(武)科別試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576 | 丙子式年文武科榜目 ²⁾ | 고려대 만송문고 |
| 1580 | 庚辰別試文武科榜目 | 고려대만송 |
| 1583 | 癸未謁聖文武科榜目 ³⁾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583 | 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 | 국립도서관 |
| 1584 | 萬曆十二年甲申秋別試文武榜目 | 계명대 |
| 1591 | 辛卯別試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594 | 萬曆二十二年甲午正月日別試武科榜目 | 연세대 |
| 1600 | 萬曆二十八年庚子式年退行於辛丑夏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03 | 萬曆癸卯式年文武科榜目 | 誠庵도서관 |
| 1605 | 乙巳增廣別試文武科榜目 | 한국정신문화연구원MF |
| 1606 | 萬曆三十四年十二月初二日式年文武科榜目 | 誠庵도서관 |
| 1612 | 萬曆四十年壬子四月日文(武)科式年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613 | 癸丑增廣別試殿試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15 | 乙卯式年文武科榜目 | 고려대 |
| 1623 | 癸亥謁聖榜目 | 서울대 |
| 1624 | 甲子增廣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27 | 天啓七年丁卯七月二十九日庭試榜目 | 서울대 |
| 1630 | 庚午式年文武科榜目 | 고려대, 계명대 |
| 1633 | 癸酉增廣文武科榜目 | 宋俊浩소장 |
| 1633 | 崇禎六年癸酉十一月日式年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636 | 丙子別試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1) 겉표지 제목은 『沖齋先祖府君及第榜目』이다.

1) 겉표지 제목은 『丙辰增廣司馬榜目』이다.

2) 『嘉靖二十八年己酉九月初九日司馬榜目』에 함께 수록되었다.

| 연도 | 방목명 | 소장처 |
|------|--|-----------------|
| 1637 | 崇禎十年丁丑八月十八日還都後庭試榜 | 서울대 |
| 1637 | 丁丑庭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644 | 甲申庭試榜目 | 국립도서관 |
| 1644 | 甲申別試文武科榜目 | 誠庵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48 | 戊子式年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49 | 己丑四月十八日庭試文武科榜目 | 국립도서관 |
| 1651 | 辛卯別試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51 | 辛卯式年九月二十二日文武科榜目 | 고려대, 성균관대 |
| 1652 | 壬辰十月二十四日增廣別試及第榜目 | 고려대 |
| 1656 | 丙申別試文武科榜目 | 宋俊浩소장 |
| 1660 | 庚子增廣別試文(武)科榜目 | 고려대 |
| 1660 | 庚子式年文武科榜目 | 誠庵도서관 |
| 1662 | 今上三年壬寅孝宗大王祔廟慈懿大王大妃尊崇孝肅王大妃尊崇王妃冊禮元子誕生合五慶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666 | 丙午九月二十二日慈殿平復重試對學合設別試榜目 | 山氣文庫, 계명대 |
| 1669 | 康熙八年己酉十月初七日庭試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72 | 壬子年別試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72 | 壬子式年癸丑退行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75 | 乙卯增廣別試榜目 | 서울대 |
| 1677 | 丁巳謁聖別試文(武)科榜目 | 고려대 |
| 1678 | 今上四年戊午仁宣王后祔廟顯宗大王祔廟慈懿大王大妃尊崇顯烈王大妃尊崇王妃冊禮慈候平復宣祖大王世室合七慶增廣別試文武殿試榜目 | 서울대 |
| 1678 | 戊午庭試(文武科)榜目 | 하버드엔칭도서관 |
| 1679 | 己未庭試別試文武科榜目 | 中國 北京大學校 |
| 1680 | 庚申六月初八日直赴文武學子座次春塘臺親臨庭試榜目 | 서울대 |
| 1681 | 辛酉式年文武科榜目 | 연세대 |
| 1683 | 癸亥增廣別試(文武科)榜目 | 계명대 |
| 1684 | 甲子庭試文武榜目 | 서울대 |
| 1684 | 甲子式年文武科榜目 | 고려대 |
| 1686 | 丙寅別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687 | 丁卯謁聖親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689 | 己巳元子定號增廣別試文武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694 | 甲戌謁聖別試文武科榜目 | 연세대 |
| 1695 | 乙亥別試榜 | 서울대 |
| 1699 | 己卯式年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02 | 壬午謁聖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02 | 壬午式年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702 | 壬午別試榜 | 고려대 |
| 1704 | 甲申春塘臺庭試別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06 | 肅宗三十二年丙戌庭試別試文武科榜目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연 도 | 방 목 명 | 소 장 처 |
|------|---|------------|
| 1707 | 丁亥文武科別試榜目 | 서울대 |
| 1708 | 戊子式年文武科榜目 | 국립도서관 |
| 1710 | 庚寅上候平復王世子平復合二慶增廣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713 | 癸巳上之即位四十年稱慶及上尊號合二慶大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14 | 甲午聖候平復稱慶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715 | 上之四十年乙未式年文武科榜目 | 계명대 |
| 1717 | 丁酉式年文武科殿試榜 | 국사편찬위원회 |
| 1718 | 上之四十四年戊戌庭試別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23 | 上之三年癸卯討逆庭試別試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23 | 癸卯式年文武科榜目 | 연세대 |
| 1725 | 乙巳聖上即位增廣別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25 | 乙巳王世子冊禮及痘患平復二慶庭試別試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26 | 丙午式年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26 | 丙午謁聖別科文武科榜目 | 계명대 |
| 1727 | 擁正五年丁未閏三月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 | 국립중앙도서관 |
| 1728 | 戊申別試文武科榜目 | 연세대 |
| 1730 | 庚戌庭試文武榜目 | 국립도서관, 精文研 |
| 1733 | 癸丑謁聖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35 | 乙卯式年文武科榜目 | 계명대 |
| 1736 | 丙辰文武科庭試別試榜目 | 연세대 |
| 1740 | 崇禎三庚申謁聖別試榜目 | 정신문화연구원 |
| 1740 | 庚申孝宗大王追上尊號大王大妃殿加上尊號大殿中宮殿上尊號合慶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50 | 庚午式年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63 | 癸未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64 | 崇禎三甲申江都府別科榜目 | 誠庵도서관 |
| 1765 | 乙酉式年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67 | 崇禎三丁亥九月十八日以親幸太學謁聖及親耕後藏種親蠶後受繭慶親臨春塘臺庭試文(武)科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71 | 崇禎三辛卯式年殿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73 | 癸巳合六慶大增廣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783 | 崇禎三癸卯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784 | 王世子冊封慶龍虎榜 | 서울대 |
| 1789 | 崇禎三己酉式年文武科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90 | 崇禎三庚戌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792 | 崇禎三壬子式文武科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794 | 崇禎三甲寅春謁聖文武龍虎榜目 | 서울대 |
| 1795 | 崇禎三乙卯式文武龍虎榜目 | 서울대 |
| 1795 | 親臨于慕華館文武科庭試別試榜目 | 『園行乙卯整理儀軌』 |

| 연 도 | 방 목 명 | 소 장 처 |
|--------|---|-----------|
| 1800 | 崇禎三庚申慶科庭試別試文武科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801 | 崇禎三辛酉夏慶科庭試文武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801 | 崇禎三辛酉夏聖上卽位元年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805 | 崇禎三乙丑冬大殿痘候平復慶科別試增廣文武科殿試榜目 | 고려대 |
| 1809 | 崇禎三己巳冬元子誕降慶科別試增廣文武科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813 | 崇禎百八十六年癸酉王大妃殿寶齡六旬上候平復王世子冊禮王大妃殿寶齡周甲合四慶慶科增廣別試榜目 | 성균관대 |
| 1825 | 乙酉謁聖龍虎榜 | 『古文書集成』38 |
| 1827 | 崇禎四丁亥增廣別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829 | 崇禎四己丑慶科庭試文武科榜目 | 서울대 |
| 1835 | 崇禎紀元後四乙未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844 | 崇禎紀元後四甲辰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1848 | 崇禎紀元後四戊申慶科增廣文武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859 | 崇禎紀元後四己未元子誕生慶科增廣文武科殿試榜目 | 연세대, 고려대 |
| 1874 | 崇禎紀元後五甲戌慶科增廣文武科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880 | 崇禎後五庚辰慶科增廣文武科殿試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 1882 | 崇禎後五壬午慶科增廣文武科殿試榜目 | 서울대 |
| <기타방목> | | |
| 1636 | 丙子十二月十一日重試榜 | 고려대 |
| 1646 | 丙戌文武科重試榜目 | 하버드-옌칭도서관 |
| 1686 | 丙寅八月二十日文武科重試榜目 | 서울대 |
| 1697 | 丁丑重試文武科榜目 | 계명대 |
| 1707 | 丁亥文武科重試榜目 | 고려대 |
| 1774 | 丙戌後三百九年甲午再登俊試榜 | 서울대 |

